
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-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연구개발, 사업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.
-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시험·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·설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-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해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 및 제22조).
- 철강사업자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 및 제25조).

- 가공 규모, 재무능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).
-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·용수·수소 공급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관련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(안 제28조).
-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, 특성화대학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2조 및 제33조).
-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또는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5조).
- 사업재편 승인기업(신청기업 포함)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(안 제37조).
-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(안 제38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Ⅲ. 관계 기관 의견

- 행정안전부는 안 제9조에 따른 “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”가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위원회가 아닌 위원회(“자문위원회등”)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1조제2항¹⁾에 따라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

-
- 1)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위원회의 설치요건) ① 「정부조직법」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(이하 “행정위원회”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 2.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 3.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(獨自性)이 있을 것
 4. 업무가 계속성·상시성(常時性)이 있을 것
-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등”이라 한다)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제11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